

2021. 3.

도내 중소·중견기업 FTA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

## 2021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2차 용역 과업지시서



충청남도경제진흥원  
충남FTA 활용지원센터

## I 과업개요

- 과업명: 「OK FTA 컨설팅 지원사업」 2차 용역
- 추진배경: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FTA활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
  - (수출기업)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을 통해 효율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 추진 가능(수출예정기업 포함)
  - (협력기업) 상위 고객사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기업을 위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업무 지원 필요
- 과업기간: 계약일 부터 ~ '21. 11. 30.까지
- 수행기관: 총 2개사
- 과업목표: 총 71개사 중 33개사
- 추진방식 및 과업내용: 관세법인(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)이 FTA전문가 자격으로 기업 방문 FTA 종합 컨설팅 수행
- 소요금액 : 금45,500,000원(금사천오백오십만원) ※부가세 포함
  - 산출내역

(단위: 만원)

지원 대상	컨설팅 유형	소요금액	산출내역	비고
	합 계	4,550		
수출업체	원산지증명서 발급	1,300	100만원×13개사	
	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	2,700	150만원×18개사	
	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	250	250만원×1개사	
수출협력업체	원산지확인서 발급	0	100만원×0개사	
	원산지확인서 전산(FTA KOREA) 발급	0	150만원×0개사	
	세관장 사전확인	0	250만원×0개사	
영세기업	원산지 관리 연중 지원	300	300만원×1개사	

※컨설팅 유형별 단가는 산자부 21년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지원 사업지침(2021.2.)에 따름

## II 세부 과업내용

- OK FTA 컨설팅: 유형별 원산지관리 컨설팅 등 FTA 활용 종합 컨설팅
  - (수출기업 지원) FTA 체약상대국에 수출 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,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
  - (수출협력기업 지원) 수출협력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 확인, 전산발급 및 세관장 사전확인\*
    - \* FTA특례법 사무처리 고시 제40조
  - (영세기업·수출초보기업) 원재료에 대한 HS코드 확인, 제조공정도 · BOM 작성방법, 근거서류 보관 등 원산지관리 전반
- 기업 지원금액
  - (지원금액) 컨설팅 유형에 따라 기업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되, 기업규모(매출액 기준)에 따라 차등지원\*

<컨설팅 유형별 지원금액>

기업분류	컨설팅 유형	지원일수(MD)*	지원금액(만원)
수출업체	원산지증명서 발급지원	2	100
	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	3	150
	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지원	5	250
수출협력업체	원산지확인서 발급지원	2	100
	원산지확인서 전산(FTA KOREA) 발급지원*	3	150
	세관장 사전확인*	5	250
영세기업	원산지 관리 연중 지원	월 30만원* × 10개월 = 300만원/개사 *월 2회 이상 현장 의무 방문	

- (지원일수) 품목에 따라 컨설팅 유형별 지원 일수에서 최대 2일까지 연장 가능하며, 기업 수요에 따라 해외규격 인증 관련 컨설팅을 2일 이내 추가 가능
- (지원제한) 1개사 당 최대 3개 품목(HSK 6단위 기준) 내 지원  
직전 2년 이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

- (자기부담금) 컨설팅 지원비용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담

< 컨설팅 비용 기업 부담률(%) >

(단위: 억원)

매출액	50이하	50~100미만	100~500미만	500~1,000미만	1,000~1,500미만	1,500~대기업 미만
부담률	0%	10%	20%	30%	40%	50%

- 관할지역: 충남 15개 시·군 (계룡, 공주, 금산, 논산, 당진, 보령, 부여, 서산, 서천, 아산, 예산, 천안, 청양, 태안, 홍성)

### 과업수행 지침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, 즉시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해당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FTA협정 및 관세법, 관세사법,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.
- 본 과업은 발주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상의 용어 해석과 과업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·지시에 따른다.
- (수혜기업 중복방지) 2개의 수행기관이 각각 수행 대상 리스트를 공유하고, 중복되는 기업이 없도록 협의하여 조정한다.
- (수행기관)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여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, 수시로 충남FTA활용지원센터와 추진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. (컨설팅 기간, 월별·컨설턴트별 추진계획 등)
- (컨설턴트) 컨설팅 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 제출 및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고, 완료보고서를 제출
- (계약위반 행위)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이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.
  - 발주처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때
  -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
- (사전진단 및 지원승인) 관세법인은 업체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방문일수 등을 포함한 컨설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고, 센터에서는 검토 후 지원 승인  
※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및 직전 2년도 지원사업 수혜 여부 확인
- (중간점검 및 완료보고) 컨설팅수행에 대한 중간점검을 7월 중

실시하고, 컨설턴트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자료 제출요구, 현장점검 및 보완조치 등에 성실히 응한다.

- 중간점검 시 수행계획의 진행 정도, 향후 계획을 보고
- **(완료보고)**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컨설팅 결과보고서,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충남FTA활용지원 센터의 1차 평가 후 완료점검을 위한 최종평가위원회에서 발표 보고로 진행
-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관세법인은 차년도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부여, 성과 미흡 관세법인은 3년간 컨설팅 참가 배제  
※ 사업계획서 상 사업목표 미달, 지원기업 중복, 컨설팅 미흡 등
- **(비용정산)** 용역비 정산은 전체 추정금액에서 수행기관이 컨설팅을 완료한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회계일정에 따름
  - 컨설팅 미완료(판정서류 미작성, 인증수출자 미취득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불가 등)시 용역비 정산 불가능
  - 선정 된 수행기관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사전협의 없이 관련 용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용역사업 완료가 지체되는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될 수 있음
-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추후일정, 사정변경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지시자와 협의하여 시행
- **(보안각서)** 신청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신뢰성 보장
  -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기간 전·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충남FTA활용지원센터 및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.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진다.

## **IV 과업수행 성과물**

- 과업수행자는 계약종료 시점에 계약기간 동안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한 용역에 대한 내용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
- 결과보고서에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(일정 협의가능)
  -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구성

구분	구성	제출기한	비고
수시보고	월별·컨설턴트별 추진계획 등	-	
중간보고	수행계획진행정도, 향후 계획 등	21년 7월 중	일정협의
완료보고	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	21년 12월 초	상동

끝.